

1. 개정이유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범위를 결정하는 측량으로서 통일된 측량기준과 처리방법 및 절차를 법령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 바, 위성측량·드론측량·전자평판 등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측량방법 등을 측량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측량 기준과 처리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기술용어에 대한 정의 및 한자용어 등을 정비하고 해석상 혼란이 우려되는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토탈스테이션”을 “토탈스테이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측량준비파일”을 “측량준비 파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측량준비파일””을 ““측량준비 파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측량현형(現形)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방법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을 ““측량현형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드론측량방법으로 관측한”으로, “각종 정보”를 “현형(現形)정보”로 한다.

1. “기지점” 이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지점을 말한다.
4. “경위의측량” 이란 수평각과 연직각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측량기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도별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기관명	명칭	기관명	명칭	기관명	명칭
서울특별시	서울	울산광역시	울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부산광역시	부산	경기도	경기	전라남도	전남
대구광역시	대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경상북도	경북
인천광역시	인천	충청북도	충북	경상남도	경남
광주광역시	광주	충청남도	충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대전광역시	대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제10조제3항 중 “고정물에 지적기준점”을 “고정물(이하 “고정물”이라 한다)에 지적기준점”으로, “각인하거나, 그 구조물에”를 “각인하거나”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부측량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② 지적확정측량과 시가지지역의 축척변경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드론측량방법 및 위성측량방법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의뢰한다”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명에 업종코드”를 “업종코드”로, “정한다”를 “부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각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이해관계인”을 “이해관계인(이하 “측량의뢰인”이

라 한다)”으로, “발급하여야”를 “교부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의뢰인에게”를 “측량의뢰인에게”로, “의뢰인으로부터”를 “측량의뢰인으로부터”로, “의뢰인이”를 “측량의뢰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첨부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토지이동을 요하지 않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로서 토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측량준비파일의 작성)”을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파일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측량준비파일”을 “제1항에 따라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파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측량준비파일”을 “측량준비파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세부측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판측량방법의 측량준비도는 연필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 전에 측량준비 파일 작성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측량대상토지가 도곽·축척·행정구역선(동·리 경계선)등의 접합부분이 벌어지거나 겹치지면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측량대상토지가 도곽·축척·행정구역선(동·리 경계선) 등의 접합부분과 벌어지거나 겹치지 않도록 조치하여 지적전산파일을 다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전산파일의 접합을 위해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등 현황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량준비파일”을 “측량준비 파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측량의뢰인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측량의뢰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니면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제1항에 따라 입회한 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측량의뢰인, 인접 토지 소유자 등”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종 인가·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를 “인가·허가 등에 따라”로, “그 변경된 토지의”를 “그 형질변경이 완료된”으로, “결정

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가·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제5항 중 “지적측량의뢰인”을 각각 “측량의뢰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지적기준점·담장모서리”를 “측량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시키고, 지적기준점·담장모서리”로, “지적측량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시키고, 측량결과도 여백에 그 거리를 기재”를 “그 거리를 측량결과도 여백에 기재”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측정점 위치설명도 작성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제7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위 고정물이 없어 3방향 이상에서 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2. 설치된 경계점표지와 고정물 간 거리가 30미터 이상이거나 고정물까지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3. 도로, 구거(溝渠: 도랑), 하천 등 연속·집단지 토지의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치설명도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20조제8항 중 “관계자료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로, “지적측량의뢰인”을 “측량의뢰인”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0항”을 “전자평판측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적측량파일
3. 측량연혁 및 과거측량(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에 한함)
자료

⑫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지적기준점이 없는 지역에서 후속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점을 설치하는 경우의 보조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0과 같다.

제20조제14항 중 “파일에서”를 “지적측량파일의 기준점 또는 제12항에 따라 설치된 보조점에서”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의 측지계가 측량시점의 측지계와 다르면 측지계 변환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를 결정해야 한다.

제20조제15항제1호 중 “토탈스테이션”을 “토텔스테이션”으로, “0° 0'0”을 “0° 0' 0”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1950.12.1”을 “1950. 12. 1.”로 한다.

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는 인접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

여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해야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토지의”를 “토지인”으로, “지목별로 분할하여야”를 “분할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분할 및 지목변경”을 “분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을 “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준비파일”을 “측량준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적측량준비도에 연필로 표시할 수 있다”를 “작성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측량자”를 “측량자의 경우”로, “검사자”를 “검사자의 경우”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따라 부₁ , 부₂ ----”를 “따라 不₁ , 不₂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준비 파일에 측량한 기하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1. 관측한 측정점에는 측정점을 중심으로 1센티미터의 방향선(┆)을 긋고, 오른쪽 상단에는 측정거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소축척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때에는 방향선과 측정거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붉은색 짧은 십자선(+)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삼각형(△)으로 표시하며, 각 측정점은 붉은색 점선으로 연결한다.

3. 평판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직경 1.5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의 검은색 원으로 표시하고, 검사자의 경우 1변의 길이가 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이하의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평판점 옆에 평판이동순서에 따라 不₁ , 不₂ ----으로 표시한다.
 4. 지적측량결과도 상단 중앙에 “전자평판측량” 이라 표기하고, 상단 오른쪽에 측량성과파일명을 표기해야 하며, 측량성과파일에는 측량성과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5. 측량결과의 파일 형식은 표준화된 공통포맷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측량결과에 대한 측량파일 코드 일람표는 별표 3과 같다.
 6.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규격·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하며, 방향선, 측정거리는 생략할 수 있다.
- ③ 위성 또는 드론을 활용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를 따르되, 위성측량방법은 방향선과 측정거리를 생략하고, 드론측량방법은 방향선, 측정거리, 측정점을 생략한다. 이 경우 위성측량은 지적측량결과도 상단 중앙에 “위성측량”이라 표기하고, 드론측량은 지적측량결과도 상단 중앙에 “드론측량”이라 표기한다.
- ④ 측량대상토지에 지상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와 새로이 설정하는 경계에 지상건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5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현황에 따라 구분표시가 필요한 경우 붉은색 이외의 색을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적기준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결과도상의 면적측정,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작성 및 검사, 측량성과도 작성, 수치의 계산 및 검사 등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고, 지적측량검사자는 지적측량결과도상의 면적측정의 검사, 도면의 정리 및 검사, 지적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및 검사란 등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일 형태의 측량결과도의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다.

제25조제4항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자평판측량”을 “전자평판방법, 위성측량방법 또는 드론측량방법”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세부측량(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을 포함한다)”을 “세부측량”으로, “하여야”를 “하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적기준점성과와 세부측량성과(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

는 세부측량은 제외한다)를 동시에 검사”를 “지적기준점성과 검사 전에 세부측량을 실시”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세부측량은 세부측량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제27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측량성과검사정리부”를 “측량성과검사정리부 지적사항란”으로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GNSS에 의한 기준점의 성과검사 방법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7조에 따른다.

제28조제4항 본문 중 “점유현황선은”을 “점유현황선(담장, 옹벽 등 지표면에 고정된 구조물에 한한다)은”으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를 “2밀리미터”로,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제4항을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 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이”를 “측량 대상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이 점유현황선과”로, “제6항”을 “제4항 및 제6항”으로, “생략하고,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발급 할”을 “생략할”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적측량의뢰인”을 “측량의뢰인”으로, “인터넷”을 “교부하거나 인터넷”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발급하여야”를 “송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표시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한다”로 한다.

제31조 중 “파일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 제1항의 토지의 고유번호”를 “파일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행정구역코드와 소관청코드, 측량업체코드, 측량종목코드, 해당년도 및 접수번호 순으”로 한다.

제37조제1호마목 중 “도로·철도·하천·구거·유지·취락”을 “도로·철도·하천·구거·유지(溜池: 저수지)·취락”으로 한다.

제38조제4항제7호 본문 중 “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를 “하천·구거·유지”로 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식에 따른”을 “서식의”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검사 절차가 있는 인가·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준공결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결의서 하단에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생략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제5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 및 등록전환”을 “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른”으로, “확인·조사하여야 한다”를 “확인·조사해야 하고, 측량성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다를 경우에는 재측량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 한다.

3. 조사자의 의견, 조사연월일 및 조사자 직·성명

00년00월00일 ○○인·허가
준공에 따른 현지조사 생략

제5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를 제71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70조) 중 “21”을 “25”로 하며,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문서의 서식 및 예시) 이 규정에 따른 서식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
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
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
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
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9.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
12. 지적업무정리부: 별지 제12호서식
13. 소유자정리부: 별지 제13호서식
14.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별첨 1
15. 도면정리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별첨 2

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항의 고무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하여”를 “항과 같이 기재하여”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원감정」”을 “「법원감정」”로 한다.

다. 법원감정측량결과도의 작성 및 보관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측량결과도 명칭 윗부분의 중앙에 붉은색으로 기재

별표 3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	드론현황선	-----	분홍색 점선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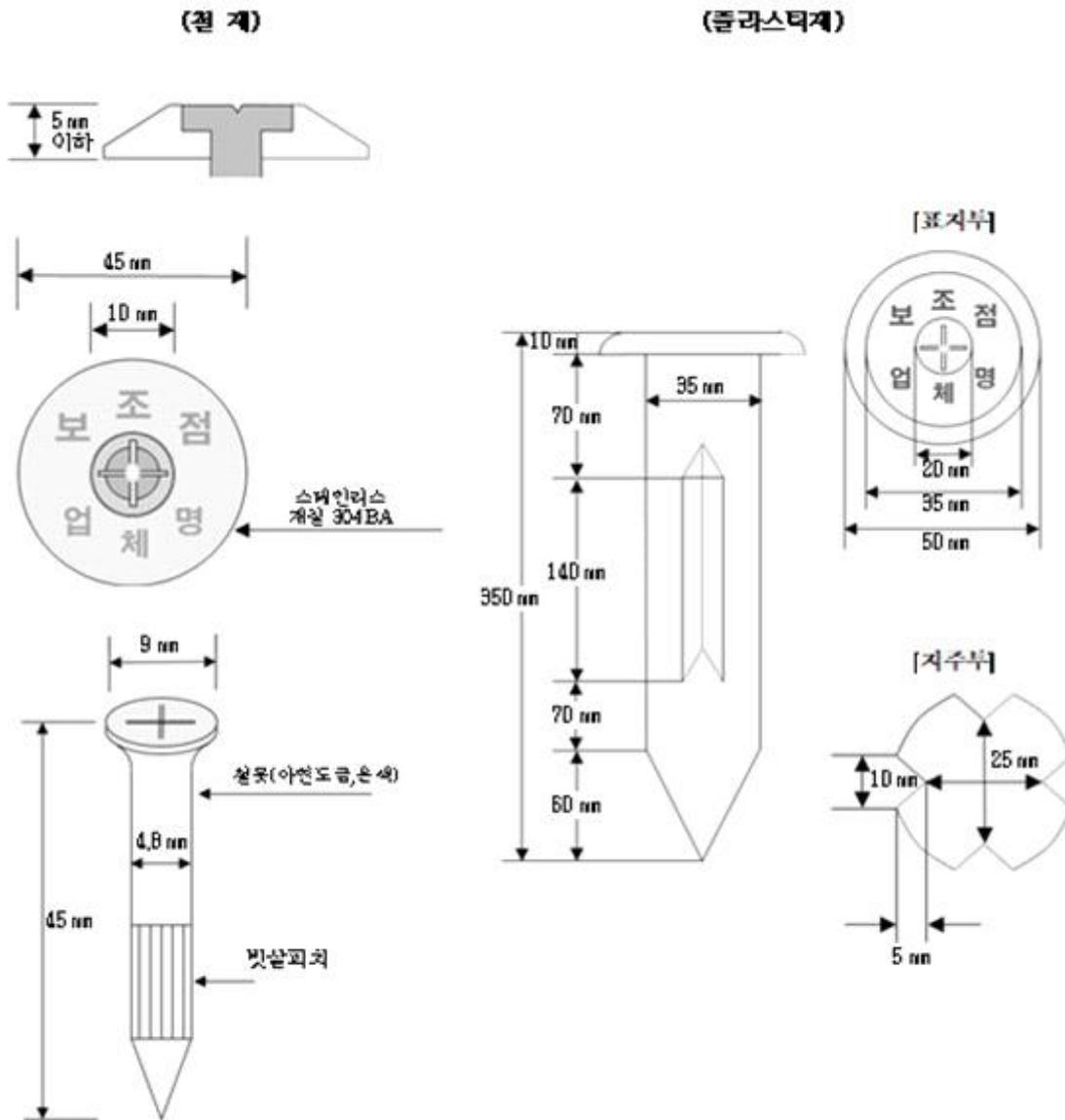
별표 3의 코드 298의 도식란 중 “000.000”을 “000.00”으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첨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조점 표지의 규격 및 재질



(비고)

1. 철제는 아스팔트 포장지역,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플라스틱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

1.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제 123 호 (지적도제 9 호) 축척 1200 분의 1
접수일 : 00년 00월 00일 (00월)

(0.0)	신축량 mm	용도지역
(0.0) 도라신축 (0.0)	0.0	○○○지역
(0.0)	보정계수 1.0000	



* 필지가 많은 경우 경계복원 또는 지적현황 측량결과도에 작성 가능

구분	관련지번	성명
측량신청인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자료부		
기준점 및 자료조사	○○년○○월○○일 ○○○지구 측량현황 도면 사용 ○○년 ○○월 ○○일 측량결과도(접수번호 ○○ 호 ○○번지) 참조	
성과결정방법	기준점 성과에 의함	
측량목적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등록전환	
특이사항 (현장상황)		

예시임

지적측량 기준점 번호	거리	방위각	좌 표	
			X	Y
12			44399.00	20102.88
13	90 21	58-59-49	44399.00	201679.80
14	86 55	118-38-37	44399.00	201755.88

기준점 번호 및 거리 방위각 좌표 기재

동리명	지번	측정방법	회수 및 산출수		측정면적	도라신축 보정계수	보정면적	원면적	산출면적	결정면적	비고
			제 1 회	제 2 회							
운학	48-1 전자		155.736	155.736	155.736	1.00	155.736	155.7	155.7	155.7	

측정면적, 보정면적은 셋째자리, 산출면적은 정계점좌표등록부 지역,1/600 지역은 둘째자리, 그 밖의 지역은 첫째자리까지, 결정면적은 등록단위까지 입력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측량 성과도		도 면	
작성	확인	작성	확인	작성	확인	정리	검사
측량	년 월 일						
		팀장	지적				
		팀원	지적				
		팀원	지적				
검사	년 월 일					시군구	
		지적					

2. 등록전환에 따른 임야분할측량결과도

42750250240111271000139040420070431.d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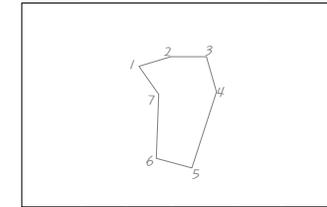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임야분할 측량결과도 제 234 호 (임야도제 2 호) 축척 6000 분의 1
접수일 : 00년 00월 00일 (00월)

(0.0)	신축량	용도지역
(0.0)	도락신축	mm
(0.0)	보정계수	○○○지역
(0.0)		1.0000



주의: 산3-1 경계선은 등록전환측량결과도의 경계점좌표를 도취하여 전개 필지수가 많은 경우 경계복원 또는 지적현황 측량결과도에 작성 가능

측정점위치설명도 324000



표지종류	수량	번호	표지종류	수량	번호
비표장용	7	1-7	활못3호		
활못1호			표시후		
활못2호			미설치		

구분	관련지번	성명
측량신청인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자료부	
기준점 및 자료조사	○○년○○월○○일 ○○지구 측량측량 도근 사용 ○○년 ○○월 ○○일 측량결과도(필수번호 ○○ 호 ○○번지) 참조
성과결정방법	기준점 성과에 의함
측량목적	등록전환을 위한 임야분할
특이사항 (현장상황)	

예시임

지적측량 기준점 번호	거리	방위각	좌 표	
			X	Y
12	m		44389.00	20192.66
13	90 21	59-53-49	44389.00	20192.66
14	86 55	118-38-37	44389.00	20175.66

동리명	지번	측정방법	회수 및 산출수		측정면적	도락신축보정계수	보정면적	원면적	산출면적	결정면적	비고
			제 1 회	제 2 회							
운학동	산 3	전차	1274.375	1274.375	1274.375		m ²	m ²	1291.2	1291.2	
	산 3-1	전차	155.736	155.736	155.736				157.8	158	
	산 3				1430.111			1499	1499.0	1499	측정지적
							아래빈칸				검사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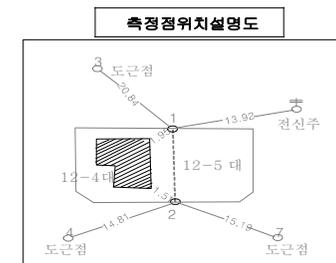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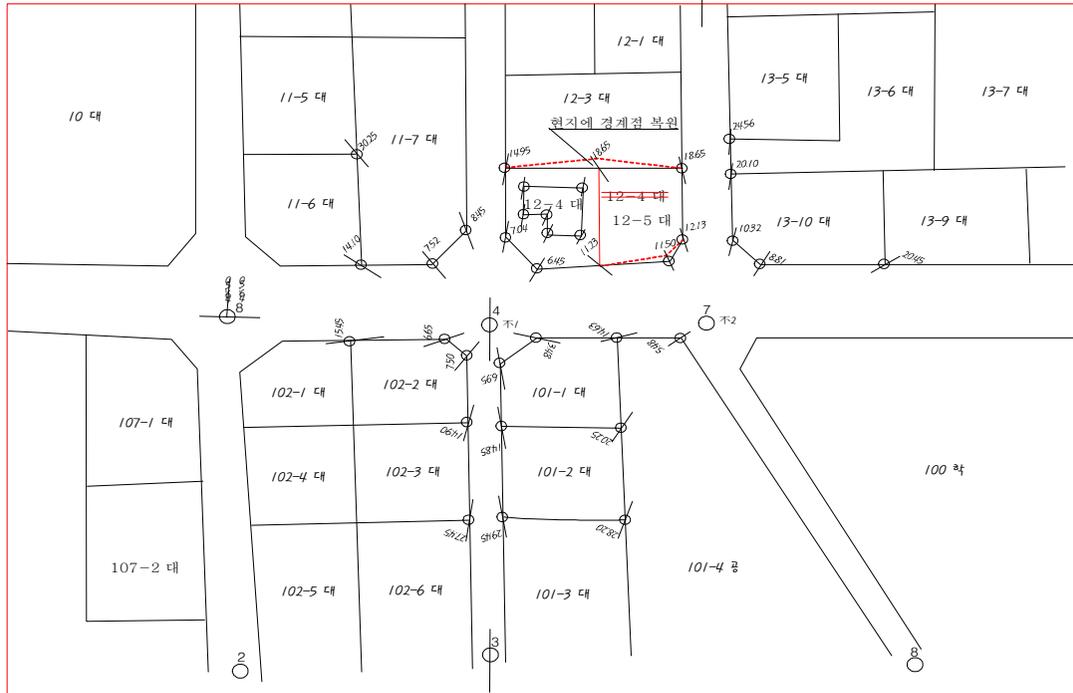
측량유비도		측량결과도		측량성파도		도면	
작성	확인	작성	확인	작성	확인	경리	검사
측량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시군구	년 월 일
검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시군구	년 월 일

기준점 번호 및 거리 방위각 좌표 기재
측정면적, 보정면적은 셋째자리, 산출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1/600 지역은 둘째자리, 그 밖의 지역은 첫째자리까지, 결정면적은 등록단위까지 입력

3. 분할측량결과도(600분의 1 지역)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분할측량결과도 제 1123 호 (지적도제 10 호) 축척 600분의 1
 접수일: ○○월 ○○일 (○○필)

(0.0)	신축량	용도지역
(0.0) 도곽신축 (0.0)	0.0	○○지역
(0.0)	보정계수	1.0000



표지종류	수량	번호	표지종류	수량	번호
번호장용			फल3호	2	1-2
फल1호			표시후 미상지		
फल2호					

구분	관련지번	성명
측량신청인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자료부	
기준점 및 자료조사	○○년 ○○월 ○○일 ○○지구 학정측량 도근 사용 ○○년 ○○월 ○○일 측량결과도(점수번호 ○○ 호 ○○번지) 참조
성과결정방법	기준점 성과에 의한
측량목적	토지 매매를 위한 분할
특이사항 (현장상황)	

323000

예시임

322800

지적측량 기준점 번호	거리	방위각	좌 표	
			X	Y
1	20	...	44389.00	20192.66
2	90 21	59-53-49	44389.00	20192.66
3	86 55	118-38-37	44389.00	20192.66

동리명	지번	측정 방법	회수 및 산출수		측정면적	도곽신축 보정계수	보정면적	원면적	산출면적	결정면적	비고
			제 1 회	제 2 회							
운학	12-4	전자	250.474	250.474	250.474				249.03	249.0	측정 지적 검사 지적
	12-5	전자	253.632	253.632	253.632				252.17	252.2	
	12-4				504.106			501.2	501.20	501.2	
	아 래 빈 칸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측량 성과도		도면	
작성	확인	작성	확인	작성	확인	정리	검사

측량 년 월 일
 팀장 지적
 팀원 지적
 팀원 지적
 검사 년 월 일
 지적
 시군구

기준점 번호 및 거리 방위각 좌표 기재
 측정면적, 보정면적은 셋째자리, 산출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1/600 지역은 둘째자리, 그 밖의 지역은 첫째자리까지, 결정면적은 등록단위까지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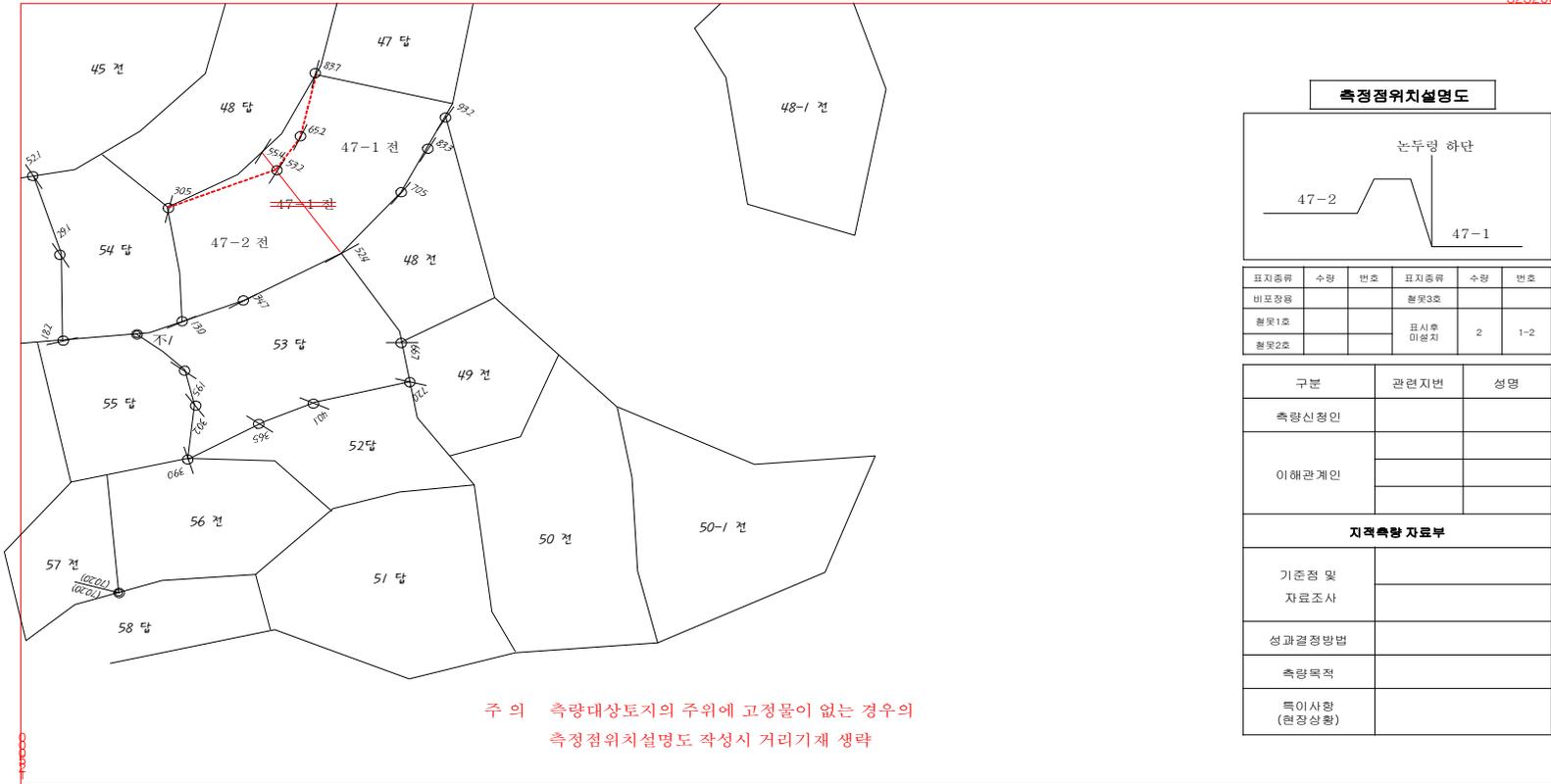
4. 분할측량결과도(1200 분의 1 지역)

42750250240111271000139040420070431.d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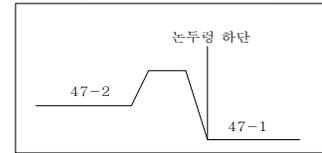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분할측량결과도 제 2254 호 (지적도제 9 호) 축척 1200 분의 1
접수일 : 00년 00월 00일 (00 필)

(0.0)	신축량	용도지역
(0.0) 도락신축	mm 0.0	○○○지역
(0.0)	보정계수	1.0000



주의 측량대상토지의 주위에 고정물이 없는 경우의
측정점위치설명도 작성시 거리기재 생략

측정점위치설명도



표지종류	수량	번호	표지종류	수량	번호
비표장용			활못3호		
활못1호			표시후 미설치	2	1-2
활못2호					

구분	관련지번	성명
측량신청인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자료부

기준점 및 자료조사	
성과결정방법	
측량목적	
특이사항 (현장상황)	

322800

지적측량 기준점 번호	거리	방위각	좌 표	
			X	Y
	m	° ' "	m	m

동리명	지번	측정 방법	최수 및 산출수		측정면적	도락신축 보정계수	보정면적	원면적	산출면적	결정면적	비고
			제 1 회	제 2 회							
운학 동	47-1 전자		638.368	638.368	638.368				638.9	684	측정 지적 년 월 일 ① 검사 지적 년 월 일 ②
	47-2 전자		620.472	620.472	620.472				616.1	616	
	47-1				1258.840			1260	1260.0	1260	
							아 래 빈 칸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측량 성파도 작성		도 면	
작성	확인	작성	확인	작성	확인	경리	검사

측량	년 월 일	팀장	지적	①
		팀원	지적	②
		팀원	지적	③
검사	년 월 일	지적		④
			시군구	

측정면적, 보정면적은 셋째자리, 산출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1/600 지역은 둘째자리,
그 밖의 지역은 첫째자리까지, 결정면적은 등록단위까지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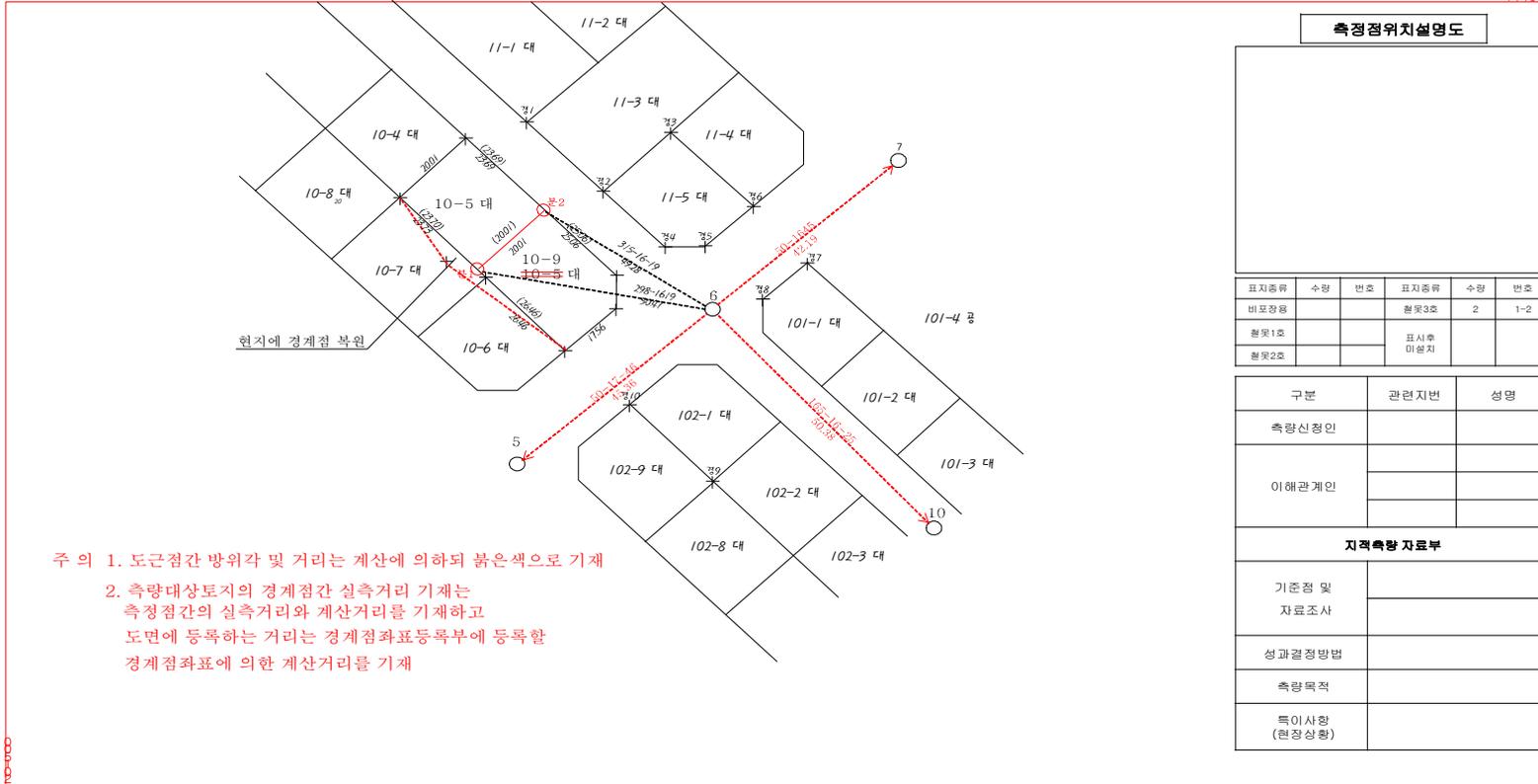
5. 분할측량결과도(좌표)

42750250240111271000139040420070431.dat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분할측량결과도(좌표) 제 954 호 (지적도제 10 호) 축척 500 분의 1
 접수일: ○○년 ○○월 ○○일 (○○월)

(0.0)	신축량 mm	용도지역
(0.0) 도박신축 (0.0)	보정계수	○○○지역
(0.0)	1.0000	



- 주의 1. 도근점간 방위각 및 거리는 계산에 의하되 붉은색으로 기재
 2. 측량대상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 기재는
 측정점간의 실측거리와 계산거리를 기재하고
 도면에 등록하는 거리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할
 경계점좌표에 의한 계산거리를 기재

측정점위치설명도					
표지종류	수량	번호	표지종류	수량	번호
비포장용			봉못3호	2	1-2
봉못1호			표시후 미설치		
봉못2호					
구분	관련지번	성명			
측량신청인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자료부					
기준점 및 자료조사					
성과결정방법					
측량목적					
특이사항 (현장상황)					

443600

지적측량 기준점 번호	거리	방위각	좌 표	
			X	Y
5			44399.00	20182.88
6	90.21	58-53-49	44399.00	20182.90
7	86.55	118-38-37	44399.00	20175.88

동리명	지번	측량 방법	회수 및 산출수		측정면적	도박신축 보정계수	보정면적	원면적	산출면적	결정면적	비고
			제 1 회	제 2 회							
화산	10-5	좌표	110.730	110.730	110.730				110.73	110.7	
	10-9	좌표	101.370	101.370	101.370				101.37	101.4	
	10-5				212.100				770.7	212.10	212.1
					아 래 린 칸						측정 지적
											년 월 일
											검사 지적
											년 월 일
											년 월 일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측량 성과도 작성	도 면	
작성	확인	작성	확인	검사		경리	검사
측량	년 월 일				팀장 지적		㉞
					팀원 지적		㉞
검사	년 월 일				팀원 지적		㉞
					지적	시군구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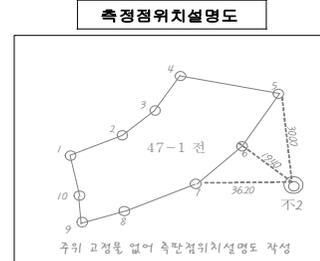
기준점 번호 및 거리 방위각 좌표 기재 측정면적, 보정면적은 셋째자리, 산출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1/600 지역은 둘째자리,
 그 밖의 지역은 첫째자리까지, 결정면적은 등록단위까지 입력

7. 경계복원측량결과도 (1200분의 1)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경계복원측량결과도 제 1664 호 (지적도제 9 호) 축척 1200 분의 1
접수일 : 00년 00월 00일 (00 월)

(0.0)	신축량	용도지역
(0.0)	도파신축 (0.0)	○○○지역
(0.0)	보정계수	1.0000



표지종류	수량	번호	표지종류	수량	번호
비포장용	10	1-10	철못3호		
철못1호			표시용		
철못2호			대성지		

구분	관련지번	성명
측량신청인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자료부		
기준점 및 자료조사		
성과결정방법		
측량목적		
특이사항 (현장상황)		

지적측량 기준점 번호	거리	방위각	좌		우		지적측량 기준점 번호	거리	방위각	좌		우	
			X	Y	X	Y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측량 성과도 작성
작성	확인	작성	확인	검사	

측량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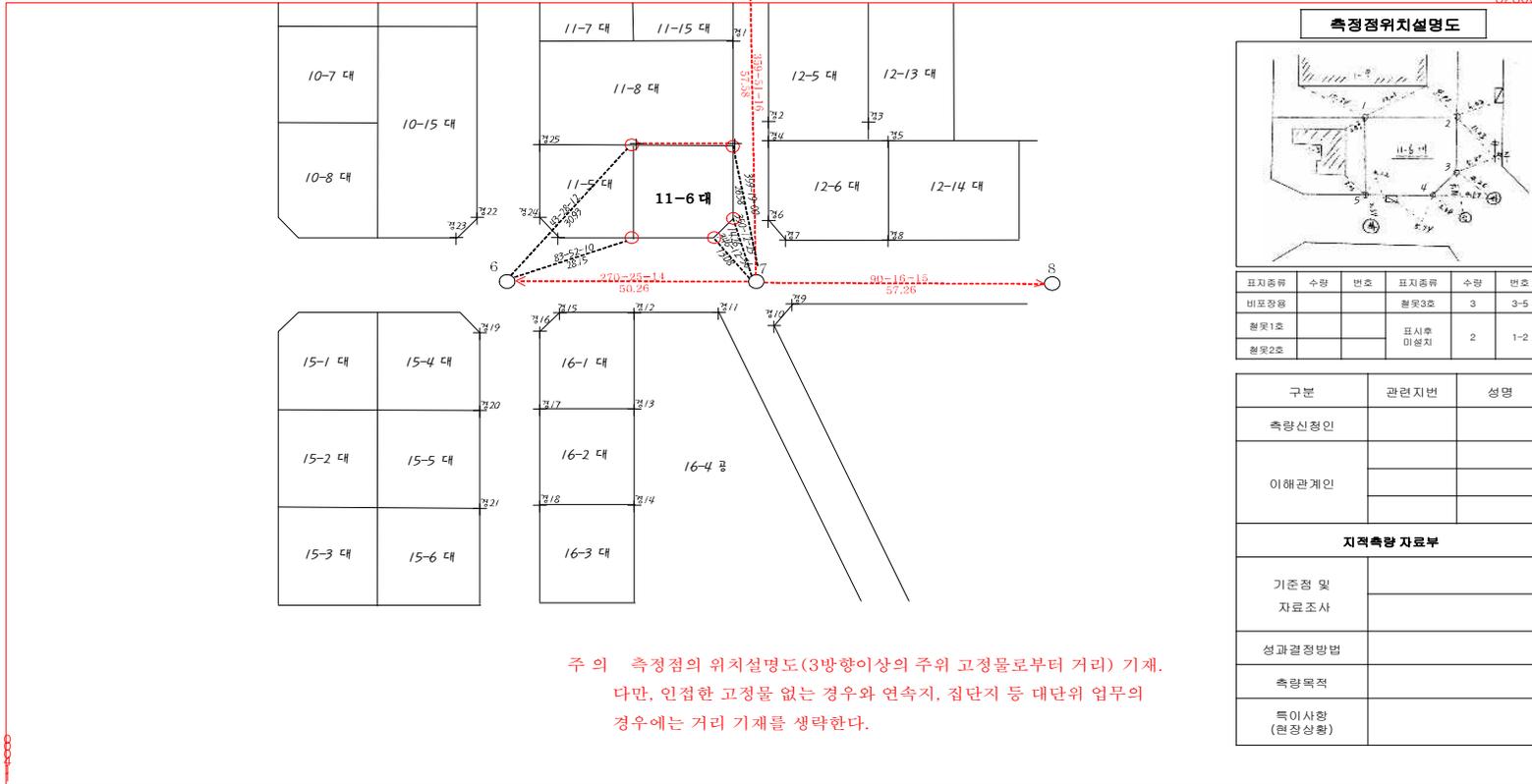
팀장 지적 인
 팀원 지적 인
 팀원 지적 인

8. 경계복원측량결과도(좌표)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경계복원측량결과도(좌표) 제 64 호 (지적도 제 8 호) 축척 500 분의 1
 접수일 : 00년 00월 00일 (00 펄)

(0.0)	신축량 mm	용도지역
(0.0) 도박신축 (0.0)	0.0	○○○지역
(0.0)	보정계수	1.0000



표지종류	수량	번호	표지종류	수량	번호
비포장용			활못3호	3	3-5
활못1호			표시후 미설치	2	1-2
활못2호					

구분	관련지번	성명
측량신청인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자료부	
기준점 및 자료조사	
성과결정방법	
측량목적	
특이사항 (현장상황)	

주의 측정점의 위치설명도(3방향이상의 주위 고정물로부터 거리) 기재.
 다만, 인접한 고정물 없는 경우와 연속지, 집단지 등 대단위 업무의 경우에는 거리 기재를 생략한다.

322800

지적측량 기준점 번호	거리	방위각	좌		표		지적측량 기준점 번호	거리	방위각	좌		표	
			X	Y	X	Y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측량 성파도 작성
작성	확인	작성	확인	검사	

측량 년 월 일 필장 지적 인
 팀원 지적 인
 팀원 지적 인

9. 경계복원측량결과도(좌표)

24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경계복원측량결과도(좌표) 제 108 호 (지적도 제 24 호) 축척 500분의 1
 접수일: 00년 00월 00일 (00 필)

용도지역 주거지역

3.경계점(보조점) 관측 및 좌표 계산										6.좌표면적 및 길간거리						
구분	측점	관측 각		고도	정측거리	제1회 수평거리	방위각	좌표		약(지번)도 면적	좌표		거리			
		1 측은 정	2 측은 반					X	Y		X	Y				
기 지점	8	9	0-00-00				차=0.00			174-3 대 S=234.7 m ²	1	19	4450.12	17	061.63	18.14
	38	160-04-45	(기지내각) 160-04-43	오차= 2 공차= 93	30.60	차=0.00			2		4442.40	0601.04	12.91			
	9	300-00-00							3		4430.89	0595.20	18.13			
보조점	8	9				318-53-26	19	4476.36	0610.39							
경계점	M.1	1	207-52-55				226-46-21	4438.78	0570.41							
		3	83-38-45				54.87									
	보.1	8					46-46-21	19	4438.78	0570.41						
							54.87									
	174-2	1	경 4-39-22				51-25-43	4450.12	0584.63							
		1	반 184-39-22				18.19									
	174-4	4	경 141-30-28				188-16-49	4415.28	0566.99							
		4	반 321-30-28				23.75									
	174-3	1					91-42-54	4438.53	0578.76							
							8.35									
	2					107-38-18	4430.89	0595.20								
						23.02										
	4					168-14-08	4426.92	0572.88								
						12.11										

1.경계점(지적측량 기준점) 좌표		4.교차점 계산		2.기지점 계산		5.면적저장분할 계산	
점명	좌표	교차점	방향	좌표	교차점 좌표	방향	방위각
	X X			X X			
(지적측량기준점)							
8	19 4476.36	17 0610.39	V		X		
9	4506.67	0583.94	V		Y		
38	4461.54	0637.16	V		X		
			V		Y		
(경계점)							
1	19 4450.12	17 0584.63	V		X		
2	4442.40	0601.04	V		Y		
3	4430.89	0595.20	V		X		
4	4438.53	0578.76	V		Y		
			V		X		
			V		Y		
			V		X		
			V		Y		
			V		X		
			V		Y		

부호도		직각조건	
A	B	A	B
M	N	M	N
P	Q	P	Q
F	G	F	G
L	C	L	C

부호도		직각조건	
A	B	A	B
M	N	M	N
P	Q	P	Q
F	G	F	G
L	C	L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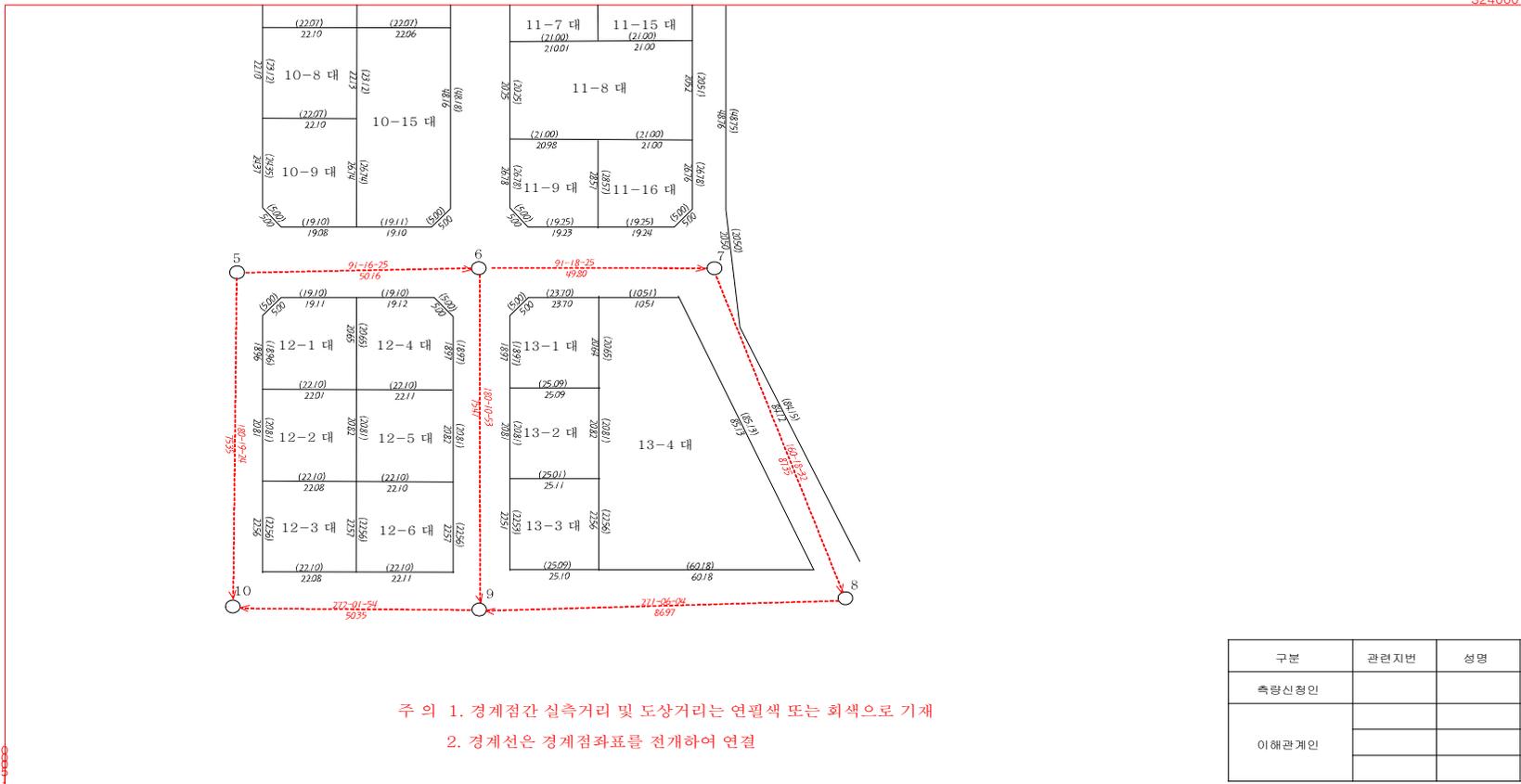
비고(공부일람)	측량결과도	수지	측량성적도
작성	확인	검사	작성
지적대면적 234.7 m ² 등급 235			
소유자	성명	○○○	담당 지적
측량기	측량	GTS-313	담당 지적
원사	원사	PBLIS 측량계산	담당 지적
주당 2000년 0월 00일			

10. 지적확정측량결과도(경위의측량방법으로세부측량을한지역)

42750250240111271000139040420070431.dat



용인시 운학동 지적확정측량결과도 제 3 호 측척 500 분의 1



323850			
지적측량 기본점 번호	거리	좌 표	
		X	Y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측량 성과도 작성
작성	확인	작성	확인	검사	

측량 년 월 일	팀장 지적	인
	팀원 지적	인
	팀원 지적	인
검사 년 월 일	시·군·구 지적	인

11. 지적전산파일에 의한 측량결과도(분할측량)

9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분할측량결과도 제 2254 호 (지적도제 9 호) 축척 1200 분의 1
 전자평판측량
 접수일: 00년 00월 00일 (00필)

(0.0)	신축량	용도지역
(0.0)	도락신축	○○지역
(0.0)	보정계수	1.0000



323200

측정점위치설명도

표지종류	수량	번호	표지종류	수량	번호
비표장용	2	1-2	철물3호		
철물1호			표시용		
철물2호			마설지		

구분	관련지번	성명
측량신청인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자료부

기준점 및 자료조사	○○년○○월○○일 ○○지구 측량용 도근 사용
성과결정방법	기준점 성곽에 의함
측량목적	등록전환을 위한 임야분할
특이사항 (현장상황)	

322800

지적측량 기준점 번호	거리	방위각	좌표
			X Y
1	m	° ' "	322843.00 128092.68
2	90 21	2-53-49	322851.58 128038.90
3	88 55	88-38-37	322854.00 128145.98

동리 명	지번	측정 방법	회수 및 산출수		측정면적	도락신축 보정계수	보정면적	원면적	산출면적	결정면적	비고
			제 1 회	제 2 회							
운학동	47-1	전산	256.712	256.712	256.712		m ²	m ²	256.7	256	측정 지역 년 월 일 검사 지역 년 월 일
	47-2	전산	246.321	246.321	246.321				245.3	245	
	47-1				508.038			501	501.0	501	
						아래 빈 칸					

측량준비도 작성 확인	측량결과도 작성 확인	측량 성과도 작성	도면 정리	검사
측량 년 월 일	측량 년 월 일	측량 년 월 일	도면 정리	검사

기준점 번호 및 거리 방위각 좌표 기재
 측정면적, 보정면적은 셋째자리, 산출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1/600 지역은 둘째자리, 그 밖의 지역은 첫째자리까지, 결정면적은 등록단위까지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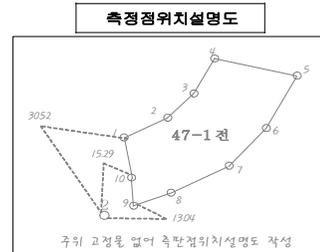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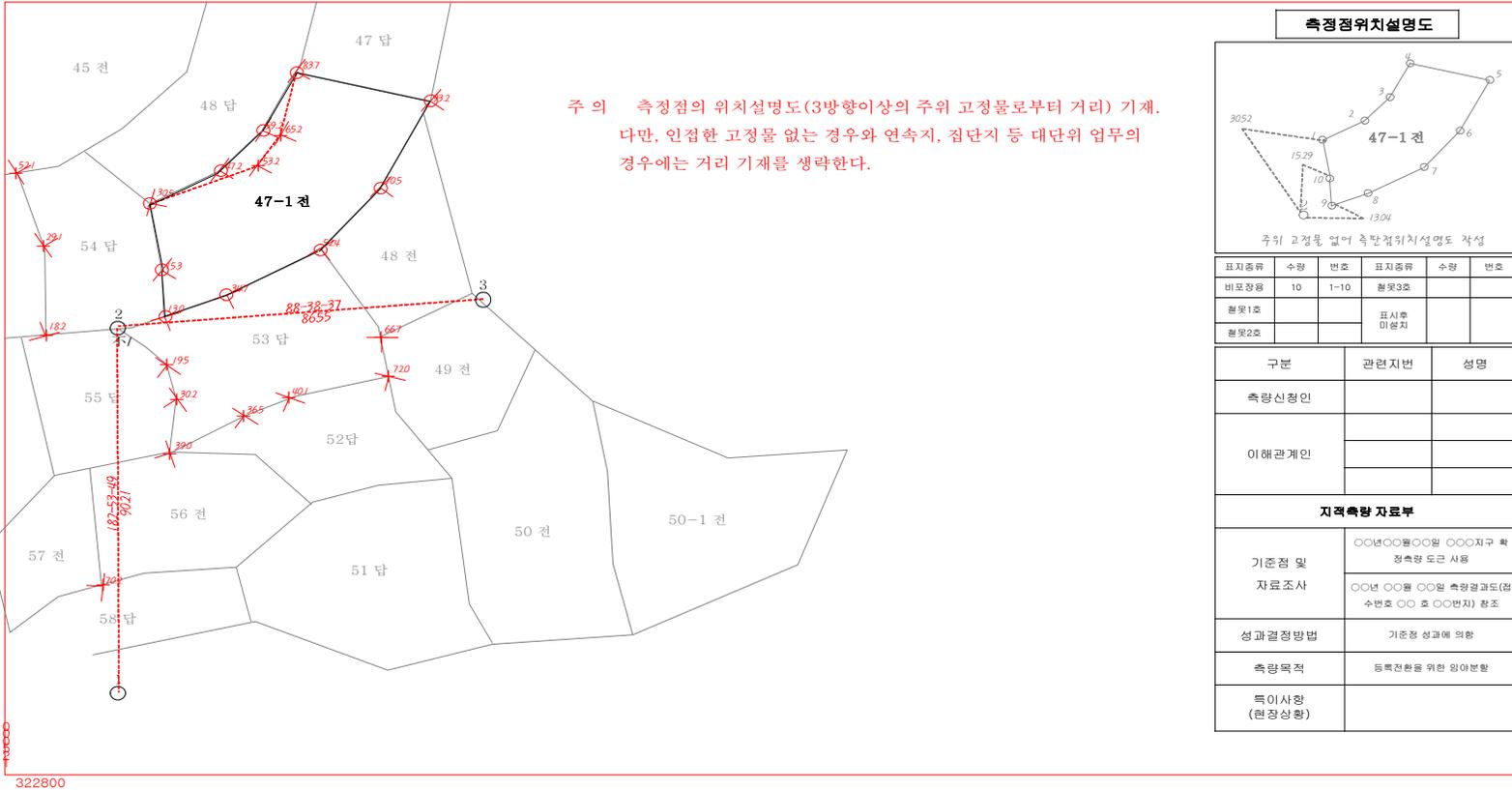
12. 지적전산파일에 의한 측량결과도(경계복원측량)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제 2254 호 (지적도제 9 호) 축척 1200 분의 1
접수일 : 00년 00월 00일 (00 필)

전자평판측량

(0.0)	신축량	용도지역
(0.0) 도라선축 (0.0)	mm 0.0	○○○지역
(0.0)	보정계수	1.0000



표지종류	수량	번호	표지종류	수량	번호
비포장용	10	1-10	물뿔3호		
물뿔1호			표시용		
물뿔2호			이설지		

구분	관련지번	성명
측량신청인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자료부	
기준점 및 자료조사	○○년○○월○○일 ○○지구 확정측량 도근 사용 ○○년 ○○월 ○○일 측량결과도(점수번호 ○○ 호 ○○번지) 참조
성과결정방법	기준점 성과에 의함
측량목적	등록전환을 위한 임야분할
특이사항 (현장상황)	

지적측량 기준점 번호	거리	방위각	좌표	
			X	Y
1	-	-	322840.00	125032.66
2	80.21	2-53-49	322851.58	125033.90
3	86.55	88-98-37	322854.00	125115.88

기준점 번호 및 거리 방위각 좌표 기재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측량 성과도 작성
작성	확인	작성	확인	검사	

측량 년 월 일 팀장 지적 인
 팀원 지적 인
 팀원 지적 인

부 칙

이 훈령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
1. “ <u>기지점(既知點)</u> ” 이란 기초 측량에서는 <u>국가기준점</u> 또는 <u>지적기준점</u> 을 말하고, 세부측량에서는 <u>지적기준점</u> 또는 <u>지적도면상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경계점과 상호 부합되는 지상의 경계점</u> 을 말한다.	1. “ <u>기지점</u> ” 이란 「 <u>지적측량 시행규칙</u> 」 제2조제1호에 따른 <u>기지점</u> 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 <u>전자평판측량</u> ” 이란 <u>토탈스테이션</u> 과 <u>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u>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3. ----- <u>토탈스테이션</u> ----- ----- ----- -----.
4. “ <u>토탈스테이션</u> ” 이란 <u>경위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초측량</u> 및 <u>세부측량에 사용되는 장비</u> 를 말한다.	4. “ <u>경위의측량</u> ” 이란 <u>수평각과 연직각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측량기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측량</u> 을 말한다.
5. “ <u>지적측량파일</u> ” 이란 <u>측량준비파일</u> , <u>측량현형파일</u> 및 <u>측량성과파일</u> 을 말한다.	5. ----- <u>측량준비 파일</u> ----- -----.
6. “ <u>측량준비파일</u> ” 이란 부동산	6. “ <u>측량준비 파일</u> ” -----

종합공부시스템에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면 및 대장속성 정보를 추출한 파일을 말한다.

7. “측량현형(現形)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방법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8. 9. (생략)

제7조(지적삼각점의 명칭 등) ①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시·도별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지적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 등) ①·② (생략)

③ 암석·석재구조물·콘크리트구조물·맨홀 및 건축물 등 견고한 고정물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물에 각인하거나, 그 구조물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4조(지적측량의 방법)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지적확정

-----.

7. “측량현형파일” 이란 전자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드론측량방법으로 관측한 ----- 현형(現形)정보-----.

8. 9. (현행과 같음)

제7조(지적삼각점의 명칭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시·도별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지적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고정물(이하 “고정물”이라 한다)에 지적기준점-----
----- 각인하거나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적측량의 방법) ① 세부 측량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과 시가지지역의 축척변경
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및 위성측
량방법에 따른다.

②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7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부측량
은 지적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이용하여 전자평판측량 방법으
로 할 수 있다.

제15조(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①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시·도
지사는 지적측량업등록신청에
관한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때에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생략)
2. 지적측량업을 등록하려는 개
인,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신원조회는 등록지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의뢰한다.
3. 지적측량업의 등록번호는 시
·도명에 업종코드와 전국일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② 지적확정측량과 시가지지역
의 축척변경측량은 경위의측량
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방법, 드론측량방법 및 위성측
량방법에 따른다.

제15조(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①
----- 시·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
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 (현행과 같음)
2. -----
-----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3. ----- 업
종코드-----

련번호를 합하여 정한다.

②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때에는 성능검사서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신고 시에는 측량업 폐업신고서 및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상실증명원(4대 보험중 하나)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6조(지적측량의뢰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수납하고, 측량예정일자가 기재된 입금표를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의뢰할 때에는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첨부된 별지 제3호 서식

----- 부여한다.

② -----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

③ -----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적측량의뢰 등) ① ---

----- 이해관계인(이하 “측량의뢰인”이라 한다)-----

----- 교부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 <후단 삭제> -----

에 따른 위임장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유지나 공유지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공부등분 발급신청을 지적소관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이 하는 신청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서 여백에 “신청위임” 이라고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 . <단서 삭제>

②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첨부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토지이동을 요하지 않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로서 토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 측량의뢰인에 -----

----- 측량의뢰인으로부터 -----
----- 측량의뢰인이 -----
----- . -----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기록내용은 측량의 피서로 같음한다.

제18조(측량준비파일의 작성) ① 평판측량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측량준비파일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측량준비도면을 연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측량준비파일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 중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좌표는 검은색으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5호 중 도곽선 및 그 수치와 지적기준점 간 거리는 붉은색으로, 그 외는 검은색으로 작성한다.

③ 측량대상토지가 도곽에 접합되어 벌어지거나 겹쳐지는 경우와 필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선에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제18조(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파일의 작성) ① 세부측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판측량방법의 측량준비도는 연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

-----.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 전에 측량준비 파일 작성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측량대상토

정구역선(동·리 경계선)과 벌어지거나 겹치지 아니하도록 측량준비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 전에 측량준비파일 작성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선을 측량하기 위해 측량준비파일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준비파일에 도시·군관리계획선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측량준비파일에 포함하여 작성한 후 시·군·구 도시계획부

지가 도곽·축척·행정구역선(동·리 경계선)등의 접합부분이 벌어지거나 겹처지면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측량대상토지가 도곽·축척·행정구역선(동·리 경계선) 등의 접합부분과 벌어지거나 겹치지 않도록 조치하여 지적전산파일을 다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전산파일의 접합을 위해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등 현황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서 담당자의 서명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 측량준비파일의 작성에 관련된 사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적기준점 간 거리 및 방위각은 붉은색으로 작성한다.

제19조(지적측량 자료조사) ① (생략)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측량준비파일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 ⑤ (생략)

제20조(현지측량방법 등) ① 지적측량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입회시켜 측량에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참고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
----- 측량준비파일-----
----- 제4항-----

-----.

제19조(지적측량 자료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측량준비 파일-----

-----.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현지측량방법 등) ① -----
----- 측량의뢰인-----
과 인접 토지 소유자 등-----

-----.

이 경우 측량의뢰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니면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지적측량결과도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서명·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와 입회는 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각종 인가·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토지의 현황대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은 세부측량을 하기 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비용을 지적측량의뢰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51필지 이상 연속지 또는 집

② ----- 제1항에 따라 입회한 자-----

---. --- 측량의뢰인, 인접 토지소유자 등-----

-- 기재해야 -----.

③ 인가·허가 등에 따라 -----

----- 그 형질변경이 완료된 ----- 결정해야 -----.
다만, 인가·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측량의뢰인-----

단지 세부측량시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할 경우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기지점에 따라 세부측량을 할 지역에서 지적측량의뢰인이 지적기준점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략)

⑦ 지적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분할 등록될 경계점의 위치 또는 경계복원점의 위치를 지적기준점·담장모서리 및 전신주 등 주위 고정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지적측량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시키고, 측량결과도 여백에 그 거리를 기재하거나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평면 직각중회선좌표 등 측정점의 위치설명도를 [예시1]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 고정물이 없는 경우와 도로, 구거, 하천 등 연속·집단된 토지 등의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 측량의뢰인-----

⑥ (현행과 같음)

⑦ ----- 측량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시키고, 지적기준점·담장모서리 ----- 그 거리를 측량결과도 여백에 기재-----

----- 작성해야 -----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측정점 위치설명도 작성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주위 고정물이 없어 3방향 이

<신 설>

<신 설>

<신 설>

⑧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⑨ (생략)

상에서 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2. 설치된 경계점표지와 고정물 간 거리가 30미터 이상이거나 고정물까지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3. 도로, 구거(溝渠: 도랑), 하천 등 연속·집단지 토지의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치설명도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⑧ -----

----- 다음 각 호의 자료를 -----
측량의뢰인-----
통지해야 ----.

1.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적측량 파일

3. 측량연혁 및 과거측량(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에 한함)자료

⑨ (현행과 같음)

⑩ 전자평판측량에 따른 세부측량은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면적측정은 전산처리 방법에 따른다.

⑪ 제10항에 따른 세부측량 시 평판점의 이동거리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 이내로 한다.

⑫ 지적기준점이 없는 지역에서 전자평판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보존이 용이한 고정물을 선점하여 보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된 보조점은 후속측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⑬ (생략)

⑭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파일에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가 잘 부합되는 기지점과 신청토지 주변을 추가로 실측하여 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삭제>

⑪ 전자평판측량-----

-----.

⑫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지적기준점이 없는 지역에서 후속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점을 설치하는 경우의 보조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0과 같다.

⑬ (현행과 같음)

⑭ -----
----- 지적측량파일의 기준점 또는 제12항에 따라 설치된 보조점에서 ----- 결정해야 -----
-- 이 경우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의 측지계가 측량시점의 측지계와 다르면 측지계

⑮ 전자평판측량의 설치 및 표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탈스테이션을 지적기준점 또는 보조점 위에 거치한 후 다른 지적기준점이나 고정물을 시준하고 수평각을 전자평판에서 0° 0' 0"로 세팅하여 관측을 준비한다.

2. 3. (생략)

제21조(신규등록측량) <신 설>

1950.12.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지적법」 제3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시 누락된 도로·하천 및 구거 등의 토지를 등록하는 경우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토지의 경계

변환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를 결정해야 한다.

⑮ -----
-----.

1. 토탈스테이션-----

----- 0° 0' 0"-----
-----.

2. 3. (현행과 같음)

제21조(신규등록측량) 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는 인접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해야 한다.

② 1950. 12. 1. -----

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전환측량) ① (생략)

② 등록전환 할 일단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어야 할 토지의 경우에는 1필지로 등록 전환 후 지목별로 분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전환할 토지의 지목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설정하되, 분할 및 지목변경은 등록전환과 동시에 정리한다.

③ ~ ⑥ (생략)

⑦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측량은 토목공사 등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20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측량기하적) ① 평판측량 방법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준비파일에 측량한 기하적(幾何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
-----.

제22조(등록전환측량) ① (현행과 같음)

② -----

토지인 -----
----- 분할해야 -----
-----.

----- 분할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삭제>

제24조(측량기하적) ① 평판측량 방법

----- 측
----- 량준비도 -----
----- 작
----- 성해야 한다.

지적측량준비도에 연필로 표시할 수 있다.

1. 평판점·측정점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 거리를 기재한다. 이 경우 측정점의 방향선 길이는 측정점을 중심으로 약 1센티미터로 표시한다. 다만, 전자측량시스템에 따라 작성할 경우 필지선이 복잡한 때는 방향선과 측정거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평판점은 측량자는 직경 1.5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의 검은색 원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1번의 길이가 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이하의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평판점 옆에 평판이동순서에 따라 부₁, 부₂ ----으로 표시한다.

3. 4. (생략)

5. 측량대상토지에 지상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와 새로이 설정하는 경계에 지상건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

1. -----

<단서 삭제>

2. ----- 측량자의 경우 -----

검사자의 경우 -----

따라 不₁, 不₂ -----

3. 4. (현행과 같음)

<삭제>

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제4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
량을 하려면 지상건물 등의 위
치현황표시는 제1항제5호를 준
용한다.

②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준비
파일에 측량한 기하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1. 관측한 측정점에는 측정점을
중심으로 1센티미터의 방향선
(┆)을 긋고, 오른쪽 상단에는
측정거리를 표시해야 한다. 다
만, 소축척등으로 식별이 불가
능한 때에는 방향선과 측정거
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붉은색 짧은 십자선(+)
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삼각
형(△)으로 표시하며, 각 측정
점은 붉은색 점선으로 연결한
다.

3. 평판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직경 1.5밀리미터 이상 3
밀리미터 이하의 검은색 원으
로 표시하고, 검사자의 경우 1
변의 길이가 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이하의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평판점 옆에 평판이동순서에 따라 不₁, 不₂ ----으로 표시한다.

4. 지적측량결과도 상단 중앙에 “전자평판측량” 이라 표기하고, 상단 오른쪽에 측량성과과 일명을 표기해야 하며, 측량성과파일에는 측량성과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5. 측량결과의 파일 형식은 표준화된 공통포맷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측량결과에 대한 측량파일 코드 일람표는 별표 3과 같다.

6.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규격·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하며, 방향선, 측정거리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성 또는 드론을 활용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를 따르되, 위성측량방법은 방향선과 측정거리를

<신 설>

1. 관측한 측정점의 오른쪽 상단에는 측정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축척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때에는 방향선과 측정거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붉은색 짧은 십자선(+)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삼각형(Δ)으로 표시하며, 각 측정점은 붉은색 점선으로 연결한다.
3. 지적측량결과도 상단 중앙에 “전자평판측량” 이라 표기하고, 상단 오른쪽에 측량성과파일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측량성과파일에는 측량성과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4. 측량결과의 파일 형식은 표준화된 공통포맷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측량결과에 대한 측량파일 코드 일람표는 별표 3과 같다.
5.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

인 및 검사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정자(正字)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정자(正字)로 해야 한다.

③ 측량결과도의 보관은 지적소관청은 연도별, 측량종목별, 지적공부정리 일자별, 동·리별로, 지적측량수행자는 연도별, 동·리별로, 지번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지적측량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중인 측량결과도 원본(전자측량시스템으로 작성한 전산파일을 포함한다)과 지적측량 프로그램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측량결과도 원본을 보내주어야 한다.

⑤ 지적측량수행자는 전자평판 측량으로 측량을 하여 작성된 지적측량파일을 데이터베이스

및 검사 등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고, 지적측량검사자는 지적측량결과도상의 면적측정의 검사, 도면의 정리 및 검사, 지적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및 검사란 등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③ -----

--- 보관해야 ----- . 다만, 파일 형태의 측량결과도의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④ -----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⑤ ----- 전자평판방법, 위성측량방법 또는 드론측량방법-----

에 저장하여 후속 측량자료 및
민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적측량파일
은 월1회 이상 데이터를 백업하
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생략)

② 세부측량(지적공부를 정리하
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을 포함한
다)을 하기 전에 기초측량을 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기준점성과
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 세부
측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
소관청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
에는 지적기준점성과와 세부측
량성과(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
니하는 세부측량은 제외한다)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④ (생략)

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
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검사방법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해야

-- 보관해야 ----.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부측량

하해

--- 지적기준점성과 검사 전에
세부측량을 실시

----- . 이 경
우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세
부측량은 세부측량성과와 지적
기준점성과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1. · 2. (생략)

<신설>

3. ~ 6. (생략)

⑥ (생략)

⑦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 검사 결과 측량성과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측량성과를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측량성과검사정리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이 경우 측량성과 검사결과 제26조제2호바목 본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되돌려 주고 그 사유를 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 비교란에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제28조(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① ~ ③ (생략)

④ 분할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측량대상토지의 분할선

1. · 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GNSS에 의한 기준점의 성과검사 방법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제17조에 따른다.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측량성과검사정리부 지적사항
란-----.

제28조(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은 붉은색 실선으로, 점유현황 선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와 점유현황 선이 같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0조제3항에 따라 분할측량성과 등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인·허가 내용을 변경하여야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함” 이라고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복원된 경계점은 직경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의 붉은색 원으로 표시하고,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가 작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복원된 경계점을 직경 1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이하의 붉은색 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⑦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 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이 일치할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점유현황선의 표시를 생략하고, 경계복

----- 점유현황선
(담장, 옹벽 등 지표면에 고정된 구조물에 한한다)은 --- 표시
해야 ---. <단서 삭제>

<삭 제>

⑥ -----

--- 2밀리미터-----

-- 제4항을 준용한다. -----

-----.

⑦ 측량 대상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이 점유현황선과 -----
---- 제4항 및 제6항-----
----- 생략할 -----

원측량성과도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⑧ (생략)

제29조(측량성과도의 발급 등) ① (생략)

②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완료하고 발급한 측량성과도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3호 전단에 따른 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송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측량성과에 따라 각종 인가·허가 등이 변경되어야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지적측량성과도에 표시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측량성과도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측량의뢰인 -----

--- 교부하거나 인터넷 ---
----- 송달해야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붉은
색으로 표시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한다.

⑤ (생 략)

제31조(지적측량성과 파일 보관 등) 지적소관청이 측량성과파일로 토지이동을 정리할 때에는 서버용 컴퓨터에 저장하되, 파일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제1항의 토지의 고유번호로 하고, 보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제37조(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 규칙 제69조제5항에 따른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1. 일람도

가. ~ 라. (생 략)

마. 도로·철도·하천·구거·유지·취락 등 주요 지형·지물의 표시

2. (생 략)

제38조(일람도의 제도) ① ~ ③ (생 략)

④ 일람도의 제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지적측량성과 파일 보관 등) -----

----- 파일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행정구역코드와 소관청코드, 측량업체코드, 측량종목코드, 해당년도 및 접수번호 순으----

제37조(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 -----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도로·철도·하천·구거·유지(溜池: 저수지)·취락 -----

2. (현행과 같음)

제38조(일람도의 제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6. (생략)

7. 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는 남색 0.1밀리미터의 폭의 2선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남색으로 얇게 채색한다. 다만, 적은 양의 물이 흐르는 하천 및 구거는 0.1밀리미터의 남색 선으로 제도한다.

8. ~ 10. (생략)

제50조(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①·② (생략)

③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하는 토지가 있을 때와 등록전환에 따라 지목이 바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1. ~ 6. (현행과 같음)

7. 하천·구거·유지-----

-----.

8. ~ 10. (현행과 같음)

제50조(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식의 -----
----- 작성해야 -----.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검사 절차가 있는 인가·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준공결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동결의서 하단에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생략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58조(도시개발 등의 사업신고)

①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95조제 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나. 지번별조서·지적(입야)도와 사업계획도와의 부합여부

다. 착수 전 각종 집계액의 정확여부

2. 제1호에 따라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그 사유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95조제 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
서와 면적측정부 및 환지
계획서의 부합여부

나. 종전토지의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 및 환지
계획서의 부합여부

다.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
좌표와 새로이 작성된 지
적도와의 부합여부

라. 종전토지 소유명의인 동
일여부 및 종전토지 등기
부에 소유권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사항이 없는지
여부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에 따라 토지대장
을, 측량성과에 따라 경계점좌
표등록부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소
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등
록번호 및 주소는 환지계획서
에 따르되, 소유자의 변동일자
와 변동원인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리한다.

가. 소유자변동일자 : 환지처
분 또는 사업준공 인가일
자(환지처분을 아니할 경
우에 만 해당한다)

나. 소유자변동원인 : 환지 또
는 지적확정(환지처분을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하
다)

3. 지적공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새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7일 이상 시·군·
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
에 게시한다.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로
인하여 폐쇄되는 지적공부는
폐쇄사유를 그 지적공부에 정
리하고 별도로 영구 보관한다.

제59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정리)

<삭 제>

① 지적소관청은 규칙 제95조제
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사업시행지별로
등록하고, 접수순으로 사업시행
지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지 번
호를 부여받은 때에는 지체 없

이 사업시행지 번호별로 도시개발사업 등의 임시파일을 생성한 후 지번별조서를 출력하여 임시파일이 정확하게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구계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시행지 번호와 지구계 구분코드(지구내 0, 지구외 1)를 입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0조(문서의 서식 및 예시) 이 규정에 따른 서식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
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
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
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

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9.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

12. 지적업무정리부: 별지 제12호서식

13. 소유자정리부: 별지 제13호서식

14.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별첨 1

15. 도면정리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별첨 2

제7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제71조(재검토기한) -----

-----25-----

한다.

---.